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38호 2019. 10. 18(금)

고 시

○ 남원시 고시 제2019-107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----- 1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2019-1750호 도시계획시설(시설:문화시설)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----- 3

○ 남원시 공고 제2019-1758호 도로지정공고 ----- 8

○ 남원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19-37호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9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19-107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남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남 원 시 장

2019년 10월 18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
사업명	위치	시설명	등급	노선 번호	사업구간	사업량	착수일	시행청	비고
							준공예정일		
남원경찰서 옆 소로 개설공사	남원시 향교동	도로	소로	3-23 3-24	남원시 향교동 944-24 ~ 남원시 향교동 944-9	L=156m B=4m	2019. 10. 2020. 2.	남원시	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남원시장

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
남원경찰서 옆 소로 개설공사

토 지 조 서

번 이	소재지 지번			지 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동	분할전	분할후				주 소	성 명	주소	성명	권리명세	
1	향교	944-2 4	944-2 4	도	6,763	121		남원시				
2	"	968	968-5	전	664	224		양*숙				
3	"	948-7		전	555	234		강*옥				
4	"	944-1 6		전	105	83		남원시				
5	"	944-9		임	1,406	3		남원시				
6	"	975		대	18,017	154		국(경찰청)				
		총 계			27,510	819						

물 건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물 건 명	상황 및 구조	편입 수량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·주소			비 고
						주 소	성 명	권리명세	성 명	주소	
1	남원시 향교동	968	상수리 나 무		563주	남원시 서문길	양*숙				
소계			1건								

남원시 공고 제2019 - 1750호

도시계획시설(시설:문화시설)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

남원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인 『남원전통가 조성사업(거리예술장터)』 시행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의 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 원 시 장

2019년 10월 18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 - 가. 명 칭 : 남원전통가 조성사업(거리예술장터)
 - 나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 - 사업의 위치 : 남원시 월매길 22번지 일원
 - 사업의 규모 : 932m²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남원시장(관광과)
 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 - ※ 붙임참조
5. 열람기간 :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
6. 열람장소 : 남원시청 도시과(063-620-6452)

7.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〈편입 토지 조서〉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면 적(㎡)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또는명칭	주소	성명또는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	합계			1,284	932						
1	남원시 쌍교동	185-1	대	217	217	남*시	남원시 시*로 *0				
2	남원시 쌍교동	185-2	대	251	251	김*금	전라북도 남원시 쌍*동 1*5-2				
						오정*	뉴질랜드 오클*드 머리스베이 시튼로드 */49				
						오*태	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*6 일반*가 *				
						오*태	울산광역시 동* 전하동 3*3-3 은**파트 에이동 3*7 호				
						오*태	경기도 과천시 중*동 *6 일반*가 *				
						오현*	전라북도 남원시 쌍*동 1*5-2				
오인*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8*5 케이제이 라미*아파트 1*4-70*										
3	남원시 쌍교동	186-2	대	377	25	박*기	전라북도 남원시 쌍*동 1*6-2	남원 새마을금고	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(하정동)	근저당	
4	남원시 쌍교동	186-3	대	190	190	김*진	전라북도 남원시 *동 2*1				
5	남원시 쌍교동	193	대	76	76	유*자	전라북도 남원시 쌍*동 1*3				
6	남원시 쌍교동	194	대	145	145	김영*	전라북도 남원시 가*뜰길 1*(금동)				
7	남원시 쌍교동	255-17	대	12	12	김*금	전라북도 남원시 쌍*동 1*5-2				
						오*태	뉴질랜드 오*랜드 머리스베이 시튼*드 */49				
						오*태	경기도 과천시 중*동 *6 일반상가 *				
						오*태	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93-3 은하아파트 *이동 3*7 호				
						오*태	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*6 일반상가 *				
						오*숙	전라북도 남원시 쌍*동 1*5-2				
오인*	전라북도 전주시 덕*구 송천동 1가 8*5 케*제이 라미안아파트 10*-7*3										
8	남원시 쌍교동	255-20	대	16	16	김*남	전라북도 남원시 가*뜰길 1*(금동)				

<편입 지장물 조서>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물 건				소유자		비 고
				물건명	구조 및 규격	편입수량	단위	성명또는명칭	주소	
1.	쌍교동	185-1	대	점포 및 주택	철근콘크리트, 조적도 슬라브지붕	120.27	m ²	남*시	남원시 시*로 60	
				계단	콘크리트 샷시난간	1.00	식			
				계단실	조적및 샷시조	8.40	m ²			
				담장	브럭	5.00	m			
				대문	철재 슬라브문간포함	1.00	식			
				바닥포장		28.20	m ²			
				수도간		1.00	식			
				화단	벽돌조	1.00	식			
				철쭉		4.00	주			
				수국		1.00	주			
				국화		1	주			
2	쌍교동	185-2	대	주택	목조강판기외지붕	68.40	m ²	김*금	전라북도 남원시 쌍*동 18*-*	
				다용도실1	조적조 강판지붕	18.48	m ²			
				다용도실2	조적조 강판지붕	13.65	m ²	오*태	뉴질랜드 오클랜드 머리*베이 시튼로* 2/4*	
				창고	조적조 강판지붕	1.43	m ²			
				쪽문	문틀포함, 샷시	1	식	오*태	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*6 일반사*가 *	
				주택	조적조 슬라브지붕	24.60	m ²			
				보일러실	조적조 판넬지붕	4.92	m ²	오*태	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*3-3 은하아파트 *이동 30*호	
				창고	조적조 슬라브지붕	3.68	m ²			
				화장실및 창고	조적조 슬라브지붕	3.80	m ²	오*태	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*6 일반사*가 *	
				담장	대문포함	12.0	m			
				대문	문간포함	1	식	오*태	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*6 일반사*가 *	
				바닥포장	보도블럭	45.00	m ²			
				수도간		1	식	오*속	전라북도 남원시 쌍*동 1*5-*	
				지하수	작두샘	1	식			
				장독대		1	식	오*속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805 *이제이 라미안아파트 *04-7*3	
				외부계단	콘크리트	1	식			
				화단	콘크리트	1	식			
				동백나무		1	주			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물 건				소유자		비 고
				물건명	구조 및 규격	면적수량	단위	성명또는명칭	주소	
3.	쌍교동	186-3	대	점포및 주택	목조,조적조 판넬및스라브지붕	113.48	m ²	김*진	전라북도 남원시 *동 *11	
				화장실및 창고	조적조 스라브지붕	17.08	m ²			
				창고	조적조 기와지붕	1.44	m ²			
				창고(2층)	목조 강판지붕	3.00	m ²			
				외부계단	콘크리트	1	식			
				대문	문간포함	1	식			
				마당		24.00	m ²			
				간판	노고단건강원	1	식			
				화단및 덕시설 (2층)		1	식			
				화단(1층)		1	식			
				철쭉		1	주			
				느티나무		1	주			
				주목		1	주			
생강나무		1	주							
4	쌍교동	193	대	주택	조적조침글 및 스라브지붕	70.63	m ²	유*자	전라북도 남원시 *교동 1*3	
				차양		9.72	m ²			
				장독대 화단 바닥포장		1	식			
				수도간		1	식			
				대문	문간포함	1	식			
5	쌍교동	194	대	주택및 창고	조적조 강판지붕	47.36	m ²	김*남	전라북도 남원시 가*뜰길 1*(금동)	
				주택	조적조 강판지붕	53.44	m ²			
				까데기	목조스레트, 대문포함	11.70	m ²			
				주택	조적조 강판지붕	15.12	m ²			
				창고	조적조 강판지붕	5.98	m ²			
				수도간	콘크리트	1	식			

◎ 남원시 공고 제 2019 -1758호

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6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19-1 5	남원시 동충동 358-7	윤*식	2019-건축과- 신축신고-359	11.62 7	1.57 5	20	남원시 동충동 358-7(대)	20	윤*식

남원시 공고 제2019 - 37호

『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5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인구 늘리기 시책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와,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 인상으로 재원확충 및 경영효율을 증대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 반영 등

2. 주요내용

- 가.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하수관로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구체적으로 설정(안 제2조)
- 나.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(안 제3조),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(안 제4조) 삭제
- 다. 분뇨수집·운반 업자의 분뇨처리 수수료 면제(안 제23조, [별표 6])
- 라.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화재시 사용되는 소방용수 등을 포함하고,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(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)
- 마. 과오납 하수도 사용료 환급 및 소멸시효 근거 규정 마련(안 제29조)
- 바.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 68%를 2020년 4월분부터 3년간 3회 분할 인상하

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수정(안 [별표 1]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0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환경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81 /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-207, 환경사업소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5809), FAX(063-620-6854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사업소(☎063-620-580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9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9. 10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환경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등 인구 늘리기 시책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와,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 인상으로 재원확충 및 경영효율을 증대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 반영 등

2. 주요내용

- 가.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하수관로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구체적으로 설정(안 제2조)
- 나.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(안 제3조),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(안 제4조) 삭제
- 다. 분뇨수집·운반 업자의 분뇨처리 수수료 면제(안 제23조, [별표 6])
- 라.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화재시 사용되는 소방용수 등을 포함하고,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(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)
- 마. 과오납 하수도 사용료 환급 및 소멸시효 근거 규정 마련(안 제29조)
- 바.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 68%를 2020년 4월분부터 3년간 3회 분할 인상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수정(안 [별표 1]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9. 10. 15. ~ 2019. 11. 4.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

4) 성별영향평가 :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법률안

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300미터”를 “직선거리 300미터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하수처리구역”을 “하수처리구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8항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단서 중 “다만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”를 “다만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”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)”를 “(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집·운반 및 처리”를 “수집·운반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및 처리 수수료”를 “수수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뇨 수집·운반업자가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분뇨의 양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”를 “수집·운반수수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상자”를 “대상자 및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, 가

품에 따른 비상급수 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는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

제26조제1항 중 “수집·운반·처리”를 “수집·운반”으로, “날”을 “날로”로, “시장에게 이의신청할”을 “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「지방세기본법」을 따른다.

제27조제1항 본문 중 “수집·운반·처리”를 “수집·운반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소멸시효)”를 “(과오납 사용료 환급 및 소멸시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른다”를 “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「지방제정법」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

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과오납 사용료 환급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12호 중 “운반·처리수수료”를 “운반 수수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 중 “분뇨운반·처리·수수료”를 “분뇨운반 수수료”로 한다.

[별표 1], [별표 2], [별표 6]을 별지와 같이 하며, [별지 제2호서식]은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요금의 적용) 이 조례의 [별표 1]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20년 4월 납기분 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3조제2항)

구분 업종	사용요율 (m ³ /월)	m ³ 당 단가(원)			
		현행	2020년 04월 납기분 부터	2021년 01월 납기분 부터	2022년 01월 납기분 부터
가정용	1-10	346	395	464	543
	11-30	432	494	580	678
	31이상	635	725	852	997
일반용	1-50	617	756	950	1,172
	51-100	677	829	1,043	1,286
	101이상	784	960	1,207	1,490
대중탕용	1-500	504	567	655	756
	501-1,000	580	652	754	870
	1,001이상	678	749	849	963
산업용	톤당	398	456	537	629

[별표 2]

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(제13조제3항)

□ 대상항목 : BOD 또는 COD, SS, 총인 또는 총질소

□ 사용료 산정기준

- 수질하수도사용료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.
- BOD 또는 COD,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
- 폐수배출량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.

□ 수질하수도사용료

◦ 항목별 산출방식

- 수질하수도사용료(원) = 오염부하량[수질초과농도(mg/L)×시간당 폐수배출량(m³/시간)] × $\frac{1}{1000}$ (kg/g) × 1일조업시간(시간/일) × 30일 × kg단가(원/kg)

※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.

◦ 수질하수도 사용료 = (BOD 또는 COD) + (총인 또는 총질소) + SS

[별표 6]

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산정기준(제23조제1항)

정 화 조 청소 수수료		분 뇨 수 거 요 금
기본요금	초과요금	
750리터까지 11,000원	리터당 13원	리터당 11원
※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은 1리터는 1kg으로 적용함		

※ 수집·운반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「하수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(하수관로를 말한다)로부터 <u>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직선거리 300미터</u> -----.</p>
<p>제3조(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) 법 제18조 및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<u>남원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분뇨처리시설 및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인공구조물·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</u></p> <p>2. <u>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</u></p>	<p>제3조(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) <삭 제></p>
<p>제4조(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) <u>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.</u></p>	<p>제4조(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) <삭 제></p>
<p>제13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</p>	<p>제13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 -- ----- -----</p>

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.

② (생략)

③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17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~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23조(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법

----- 하수처리구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-----

-----.

제17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. 다만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 등) ① -----

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할 경우에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·징수한다.

1. 분뇨(오수처리시설·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)의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·징수한다.

2. (생략)

3. 분뇨수집·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24조(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)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

수
집·운반
수
수수료

1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뇨 수집·운반업자가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분뇨의 양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<삭제>

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
 제25조(감면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뇨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(생략)
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
 3. ~ 6. (생략)
- <신설>

② (생략)
 제26조(이의신청)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분뇨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

제25조(감면 등) ① -----

 ----- 수집·운반수수료 -----

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 ----- 대상자 및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, 가물에 따른 비상급수 지역
3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는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

② (현행과 같음)
 제26조(이의신청) ① -----
 ----- 수집·운반 -----

 ----- 날로 ----- 증명자료

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27조(연체금 및 독촉)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분뇨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9조(소멸시효) 사용료·점용료, 원인자부담금,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른다. <후단 신설>

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「지방세기본법」을 따른다.

제27조(연체금 및 독촉) ① -----

----- 수집·운반 -----

----- <단서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과오납 사용료 환급 및 소멸시효) ① -----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다만 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「지방제정법」 제82조에

<신 설>

제30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다음
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
임한다.

- 1. ~ 11. (생 략)
- 12. 제23조에 따른 분뇨 운반·
처리수수료의 징수
- 13. 제25조에 따른 사용료·점
용료, 원인자부담금, 분뇨운반
·처리·수수료 감면
- 14. ~ 16. (생 략)

따라 5년으로 한다.

② 과오납 사용료 환급시 과오
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
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
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
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
제30조(권한의 위임) -----

-----.

- 1. ~ 11. (현행과 같음)
- 12. ----- 운반 수
수수료-----
- 13. -----
----- 분뇨운반
수수료 -----
- 14. ~ 16. (현행과 같음)